##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조사표 작성방법 안내

○ 사업주께서 먼저 「**사업주 대상 조사표**」를 작성하시되, **부가조사표(**조사표 6쪽)를 적으실 때는 아래 근로자 선정기준에 맞는 근로자들의 임금('22년 10월)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조사대상 근로자 선정기준

- ① 조사대상은 귀사에서 최저임금액("22년 시급 9,160원)의 1.5배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 최저임금액의 1.5배: 시급 13,740원, 일환산액 109,920원(일8시간), 월환산액(주휴수당 포함) 2,871,660원(주40시간), 3,105,240원(주44시간)
- ② 조사대상 근로자 수는 귀사의 사업체 규모에 따라 결정
  - 정규·비정규 여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 중에서 선정

<b>사업체 규모</b> (상용근로자 수 기준)	4명 이하	5~9명	10~99명	100~299명
조사대상 근로자 수	최대 4명	최대 5명	최대 7명	최대 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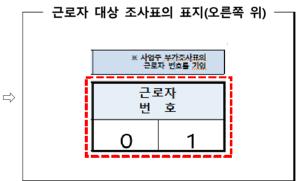
\*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구두계약 포함)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

사업체의 유급임원(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까지 포함
③ 선정요령: 성별과 직종을 골고루 안배하여 **임금이 가장 낮은 근로자부터 선정**하되,

사업체 규모별 선정 가능 근로자 수 범위를 준수하여 가능한 최대인원을 조사

○ 「사업주 대상 조사표」의 부가조사표에 있는 '①근로자 번호'를 「근로자 대상 조사표」 표지의 오른쪽 위의 '근로자 번호' 칸에 그대로 적은 후,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 대상 조사표」를 배부하시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업주 및 근로자 조사표의 해당 문항을 모두 작성하신 후에는 조사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조사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할 정확한 통계의 작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엄격히 비밀이 보호됩니다.)

##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8040호) ◆

- ► 조사기간: '22.11.15.(화)~12.5.(월) (인터넷 조사: 11.15.(화)~11.28.(월))
- ► 조사방법: 사업체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인터넷, 팩스, 이메일) 조사 가능
- ▶ 인터넷 조사 홈페이지: www.narastat.kr/mwc2022i
  - \* 조사표 제출 및 인터넷 조사 참여 방법은 담당 조사원에게 문의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조사표 표지 하단의 연락처 참조)